

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정 2022.02.1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오산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
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학교체육위원회
2. 생활체육위원회
3. 경기력향상위원회
4.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
5. 여성체육위원회
6. 그 밖에 본회 정관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

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2명 이하
3.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 등)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
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
중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본회 규약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의 구성 비율은 본회 정관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야
한다.
3.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
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본회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의 제척·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8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경비의 지급) 본회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

제13조(학교체육위원회)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청소년 방과후 수업 등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2. 체육 영재 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항
3.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

제14조(생활체육위원회)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

제15조(경기력향상위원회)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적 경기력 향상과 기본계획
2. 스포츠과학 연구발전 및 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
3.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
4. 우수선수 소질 보유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
5. 전국체육대회(동계·하계·소년체전) 및 경기도체육대회 제반 사항
6. 선수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경기력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7. 체육장학금 수혜조사 지급 및 추천에 관한 사항
8.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

제16조(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)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스포츠클럽 육성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

제17조(여성체육위원회)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여성체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여성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부 칙 <2022.02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